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순임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순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38
----------	-----

발의연월일 : 2023년 11월 7일

발의자 : 양순임, 소형준, 강수진, 이용진,
정병기, 박영섭, 이관우, 이인순,
오중균, 김육영, 권영애, 정해숙,
김경이, 진선아, 경수현, 이일준,
임현주, 이호건

1. 제안이유

‘마을서점’이라는 명칭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상의 명칭인 ‘지역서점’으로 개정하여 동일하게 사용함으로써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나. 마을서점을 지역서점으로 명칭 변경함(안 제2조 ~ 제12조)
- 다. 구청장으로 하여금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 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정비함
(안 제9조제1항, 안 제9조제3항, 안 제1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 다. 사전협의 : 문화체육과
- 라. 입법예고 : 2023. 11. 7. ~ 2023. 11. 13.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에 따라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소재하는 서점의 경영안정과 지역문화 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고,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마을서점”이란”을 ““지역서점”이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마을서점”을 각각 “지역서점”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마을서점의”를 “지역서점의”로, “마을서점 육성”을 “지역서점 육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마을서점”을 “지역서점”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마을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마을서점의”를 “지역서점의”로, “마을서점 활성화”를 “지역서점 활성화”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마을서점”을 “지역서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제5호 중 “마을서점”을 “지역서점”으로 한다.

2.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 우선 이용에 관한 사항

3. 구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와 지역서점 연계 방안

제6조의 제목 “(마을서점 지원)”을 “(지역서점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호 중 “마을서점”을 각각 “지역서점”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기관, 출판사, 지역서점,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의 제목 “(마을서점 인증)”을 “(지역서점 인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마을서점’으로 인증해 마을서점”을 “지역서점’으로 인증해 지역서점”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마을서점”을 “지역서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서점”을 각각 “서점일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1년”을 “사업자등록일 기준 1년”으로 하며, 같은 호 및 제5호 중 “서점”을 각각 “서점일 것”으로 한다.

1.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의 종류가 서적 소매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도서 판매를 주종으로 할 것

제9조제1항 중 “마을서점으로”를 “지역서점으로”로, “별지 제1호 서식의 성북구 마을서점”을 “별지 제1호서식의 성북구 지역서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2호 서식의 성북구 마을서점”을 “별지 제2호서식의 성북구 지역서점”으로 한다.

제10조 중 “마을서점”을 “지역서점”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마을서점”을 “지역서점”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마을서점과의 우선조달계약)”을 “(지역서점과의 우선조달계약)”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를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마을서점”을 “지역서점”으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호

성북구 지역서점 인증서

상 호 :

대 표 자 :

소 재 지 :

인증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2년간)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성북구 지역서점으로 인증합니다.

년 월 일

성 북 구 청 장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서울특별시</u> 성북구에 소재하는 서점의 경영안정과 지역문화 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고, <u>내실 있는 서점을 ‘성북구 마을서점’으로 인증함으로서</u>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u>마을서점</u>”이란 일정기간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p> <p>제3조(적용범위) ① 구의 <u>마을서점</u>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출판문화산업 진흥법</u>」 제7조의2에 따라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소재하는 서점의 경영안정과 지역문화 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고,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 “<u>지역서점</u>”이란 「<u>출판문화산업 진흥법</u>」(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 -----.</p> <p>제3조(적용범위) ① --- <u>지역서점</u> ----- ----- -----.</p>

②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마을서점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호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을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마을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마을서점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마을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마을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 마을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

② ----- 지역서점-----

-----.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

----- 지역서점의 -----
----- 지역서점 육성 -----
-----.

② -----

----- 지역서점-----
-----.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① ----- 지역서점의 ---

-- 지역서점 활성화 -----
-----.

② -----
-----.

1. 지역서점 -----

책의 기본방향

2. 경영 등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3. 선진 유통기법 및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4. 마을서점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마을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마을서점 지원) 구청장은 마을서점의 경영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 4. (생략)

5. 그 밖에 마을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신설>

제7조(마을서점 인증) 구청장은 제8조 기준에 적합한 서점을 ‘성북구 마을서점’으로 인증해 마을서점의 내실을 도모하고 신

2.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 우선 이용에 관한 사항

3. 구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와 지역서점 연계 방안

<삭제>

5. ----- 지역서점 -----

제6조(지역서점 지원) -----
지역서점-----

-----.

1. ~ 4. (현행과 같음)

5. ----- 지역서점 -----

제6조의2(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기관, 출판사, 지역서점,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지역서점 인증) -----

----- 지역서점’으로 인증해 지역서점-----

퇴를 구축한다.

제8조(인증기준) 마을서점의 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점업 등록 업체

2.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서점

3. 매장규모(바닥면적)의 50% 이상 순수도서를 구비한 서점

4. 성북구에서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서점

5.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학원, 납품위주 업체, 유통사, 도매업 제외, 종교전문서점, 어린이 전집 할인매장 등 제외)

제9조(인증절차) ① 성북구 마을서점으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성북구 마을서점 인증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

제8조(인증기준) 지역서점-----

-----.

1.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의 종류가 서적 소매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도서판매를 주종으로 할 것

2. -----
서점일 것

3. -----
----- 서점일 것

4. ----- 사업자등록일 기준 1년 ----- 서점일 것

5. -----
----- 서점일 것-----

제9조(인증절차) ① ----- 지역

서점으로 -----

--- 별지 제1호서식의 성북구

지역서점 -----

---.

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 통지를 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성북구 마을서점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인증의 유효기간) 성북구 마을서점의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서를 교부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소관부서의 평가를 통하여 인증기간을 2년씩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인증 취소 및 제한) 구청장은 성북구 마을서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 1. ~ 3. (생략)

제12조(마을서점과의 우선조달계약) 구청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자에 해당되는 마을서점에 대하여 도서에 관한 조달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구청장은 구의 마을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기여한

③ -----
----- 별지 제2호서
식의 성북구 지역서점 -----
-----.

제10조(인증의 유효기간) -----
지역서점-----

-----.

제11조(인증 취소 및 제한) -----
----- 지역서점-----

-----.

- 1. ~ 3. (현행과 같음)

제12조(지역서점과의 우선조달계약) -----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 지역서점-----

-----.

<삭 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
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